

부산광역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. 11. 22. -----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4. 11. 23.

다. 상 정 일 자 : 2004. 12. 17.(제12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상정,
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환경청소과장 이정상)

가. 제안이유

-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(공포 2004. 1. 29, 법률 제7129호)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·공포(2004. 7. 29)됨에 따라, 공중화장실 시설설치 및 관리기준 등의 근거가 없어, 효과적인 유지관리가 어려워 법령에서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례로 제정하여 근거로 삼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자는 위생적으로 유지·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시설 유지(안 제4조)
- 화장실 청결유지, 소독 및 도색주기 등 관리기준을 정함(안 제9조)
- 구청장은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을 상시 개방하게 하고, 법인·개인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, 개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, 제12조)
- 유료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에게 신고 후 운영하도록 함(안 제16조)
-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(안 제18조)

다. 취득대상 재산현황

연번	사업명	구분	소재지	면적 (㎡)	지목 (구조)	시설 내용	소요예산 (천원)
총계	2			토지:461 건물:737		건물 15개동	423,500
1	쌘지공원 조성 (제1지구)	소계		678			241,600
		토지	감천동 6-1165외 6필지	251	대지		114,500
		건물	감천동 6-1165외 8개동	427	블록, 스레트외	건물 8개동	127,100
2	쌘지공원 조성 (제2지구)	소계		520			181,900
		토지	감천동 6-1774외 1필지	210	대지		95,500
		건물	감천동 6-1774외 7개동	310	블록, 스레트외	건물 7개동	86,400

3. 관계법령

-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
-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변경 승인의 건은 고지대 저소득층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하구 감천2동 6-115번지 일원의 방치된 빈집 등을 매입하여 쌘지공원을 조성하므로서 영세민 밀집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의 휴식 및 여가 활동공간의 기능을 부여할 뿐만아니라 방치된 빈집 등에 무단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한 생활 주변 환경 악화를 개선하고 저비용으로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실익이 있으며
- 또한 본 쌘지공원 조성사업은 부산시 주요 시정과제의 하나인 Well-being 시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비 전액 시비보조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억 2,800만원 중 2005년도 예산에 4억 3,646만5천원이 이미 내시되어 있으며 나머지 예산확보를 위하여 변경 승인합이 옳다고 판단되며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

- 본 조례 제정 건은 공중화장실 시설설치 및 관리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 하므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가 용이하고 기존시설물의 정비와 도시발전을 연계시켜 변화와 활력이 넘치는 도심환경이 조성 되도록 유도하고
- 공중화장실 설치의 필요와 장소의 적정성에 따라 합리적인 수급관리가 가능할 뿐 아니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며 나아가서는 국민보건증진과 대민 편익제고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되며
- 그리고 관련법령에 공중화장실 설치근거가 명문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례 제정 건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